

# 예산총칙

제 1 조 202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           | 세입·세출 예산총액    | 일시차입한도액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총 계            | 7,523,209,036 | 225,695,000 |
| 일반회계           | 6,742,000,000 | 202,260,000 |
| 특별회계           | 781,209,036   | 23,435,000  |
| 기타특별회계         | 781,209,036   | 23,435,000  |
| ·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| 8,700,000     | 261,000     |
| ·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| 18,000,000    | 540,000     |
| ·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 | 6,420,000     | 192,000     |
| ·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| 384,718,000   | 11,541,000  |
| · 소방특별회계       | 363,371,036   | 10,901,000 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(채무부담행위사업) : "해당없음"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(명시이월사업) : "해당없음"

제 6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40,939,422천원으로 하고  
재해·재난목적예비비는 6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76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 
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.

- (1) 공무원 기준인건비
- (2) 차입금 원리금상환
- (3)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, 배상금, 법정전출금
- (4) 재난대책 및 복구비